

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제정 1997. 9. 13 규칙 제115호
개정 2001. 4. 14 규칙 제262호
2005. 10. 5 규칙 제464호
일부개정 2019. 11. 18 규칙 제984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9. 11. 18]
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9. 11. 18>

1. “지원사업”이란 노인복지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말한다.
2. “지원사업자”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기금지원대상의 범위)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관내 노인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9. 11. 18]

제4조(기금의 지원신청)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노인복지기금 지원 신청서를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19. 11. 18>

제5조(기금 지원 결정 등)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후 용인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.

<개정 2019. 11. 18>

1. 법령과 기금의 지원용도에 적합여부
2. 지원사업의 적정여부

- 3. 금액산정의 적정여부
- 4.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
- 5. 지원사업자의 해당업무 실적여부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기금 지원 여부와 조건을 지원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1. 18>

[제목개정 2019. 11. 18]

제6조(기금 지원금의 교부) ① 지원사업자가 지원금을 교부받으려는 때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노인복지기금 지원금 교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19. 11. 18>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지원금 교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·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당해 사업 개시 전까지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1. 18>

[제목개정 2019. 11. 18]

제7조 삭제 <2019. 11. 18>

제8조(지원사업의 중단) ① 지원사업자는 사정에 의한 변경으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신고하고, 지원받은 금액을 정산한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지원사업자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9. 11. 18]

제9조(기금 지원금의 정산) 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노인복지기금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19. 11. 18>

[제목개정 2019. 11. 18]

제10조 삭제 <2019. 11. 18>

제11조(장부의 비치)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보다

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.
〈개정 2019. 11. 18〉

1.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(별지 제4호서식)
2.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장(별지 제5호서식)
3. 현금 출납대장(별지 제6호서식)

② 제1항 각 호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. 〈신설 2019. 11. 18〉

[제목개정 2019. 11. 18]

제12조(세칙)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. 〈개정 2019. 11. 18〉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01. 4. 14〉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05. 10. 5 규칙 제464호〉

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19. 11. 18 규칙 제984호〉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19. 11. 18>

노인복지기금 지원금 교부 신청서					
기관·단체명					
소재지					
사업의 목적					
사업개요					
교 부 내 역					
총사업비	사 업 비 내 역				비 고
	지원금 신청액	자 체 부담금	후원금	기 타	
<p>「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.</p> <p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단체(기관명) : (직인)</p>					
용 인 시 장 귀하					

[별지 제3호서식] <개정 2019. 11. 18>

노인복지기금 지원금 정산서

○ 사업비 집행상황

(단위 : 원)

구 분	수 입 액	집 행 액	비 고
계			
노인복지기금			
자체 부담금			
후 원 금			
기 타			

- 붙 임 : 1. 사업추진실적 1부
- 2. 사업비 집행내역 1부

「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단체(기관명) (직인)

용 인 시 장 귀하

[별지 제4호서식]

노인복지기금관리대장								
년월일	예 금				인 출		잔액	비고
	예금종류	금액	이율	기간	적요	금액		

[별지 제5호서식]

노인복지기금지급대장				
년 월 일	적 요	지 급 처	지 급 액	비 고

[별지 제6호서식] <개정 2019. 11. 18>

현 금 출 납 부							
년 월 일	적 요	수 입 액	지 급 액	잔 액	결 재		
					담당자	팀 장	과 장